

서울특별시의회 한옥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9
----------	----

2014년 9월 30일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4. 8. 25. 남재경 의원 외 24명
- 나. 회부일자 : 2014. 8. 26.
- 다. 상정일자 : 제256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2014년 9월 25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남재경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의 중심부인 도심부 주변지역은 조선시대 한양의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서촌과 북촌 등 한옥밀집지역으로 최근 시민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 서울시는 이미 해당 지역을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북촌/경복궁 서측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해당지역을 보호하고, 이 지역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고자 하는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다만,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과거 모습 그대로의 보존과 복원에 치중하면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일방적인 희생과 소외를 강요하고 있음.

- 이에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역사와 문화보존은 물론이고, 해당 지역주민과의 공존·공생을 위한 미래지향적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의 한옥지원과 관련 조례의 제.개정을 위한 한옥 및 한옥밀집지역 지원을 위한 한옥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함.

나. 주요내용

- 1)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에 따라 한옥 및 한옥밀집지역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한옥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2) 위원 수는 15명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위원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 3)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

3. 참고사항

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나.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

다.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석전문위원 : 박 노 수)

□ 검토요지

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개요

-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 등에 근거하여 구성되는 것으로, 한옥의 보존과 복원을 위한 집행부의 정책집행 과정에서 한옥밀집지역 주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재산권 행사 등의 권리 제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에서 미래 지향적 발전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한옥 및 한옥밀집지역의 지원을 강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한옥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임.

나 특별위원회 구성의 필요성 및 타당성

- 서울시는 「한옥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종로구 소재 북촌과 경복궁 서측 등 총 5개 한옥밀집지역에 대하여 한옥등록제를 실시하고, 한옥수선 비용에 대한 보조·용자 지원, 세제 등의 감면 등 한옥 보존과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음.
- 그러나 한옥밀집지역내 지역주민들은 도시계획상 용도 제한 및 도시기반시설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정당한 재산권 행사의 제약과 함께 많은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임.
- 서울시가 제출한 2011년 이후 한옥밀집지역 민원처리결과를 보면 접수된 총 민원 42건 중에서 한옥지원 절차에 대한 민원이 15건이며, 도시계획 제한에 대한

민원이 10건으로, 한옥 보전을 위한 지원정책과 한옥밀집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상의 제한이라는 양면성을 가진 정책으로 인해 한옥밀집지역 주민들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제도적 갈등 해소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에서 서울의 역사와 문화보존을 위한 한옥지원정책과 해당 한옥밀집지역 주민의 공존·공생을 위한 미래지향적 발전방안을 제도적 차원에서 강구하기 위하여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음.

다 관련 상임위원회 의견 조회 결과

- 동 안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제2항에 따라 관련 상임위원회인 도시계획관리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의견 조회하였으나 특별한 의견 제시는 없었으며, 서울시는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음.

한옥지원 특별위원회 관련 서울시의견

- 우리시 한옥정책 현황 분석 및 개선대책 마련을 위하여서는 2014년 수차례 전문가 정책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세부 추진사항을 기획 중에 있으며
- 2014년 9월 무분별한 한옥 철거를 막기 위하여 한옥 철거 전 자치구 건축위원회 자문을 실시토록 하였고, 필운대로 역사문화거리 조성 등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택사업특별회계를 편성하는 등 한옥 보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최근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2015. 6. 4. 시행 예정으로 하위 법령·조례 제정 관련하여 현재 집행부 차원에서 중앙부처 협의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 중이며, 향후 조례 제·개정사항에 대하여서는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

8. 소수 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의회 한옥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안 번호	29
----------	----

발의년월일 : 2014년 8월 25일

발 의 자 : 남재경 의원외 24명

1. 주 문

- 가.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에 따라 한옥 및 한옥밀집지역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한옥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나. 위원 수는 15명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위원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 다.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

2. 제안이유

- 서울의 중심부인 도심부 주변지역은 조선시대 한양의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서촌과 북촌 등 한옥밀집지역으로 최근 시민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 서울시는 이미 해당 지역을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북촌/경복궁 서측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해당지역을 보호하고, 이 지역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고자 하는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다만,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과거 모습 그대로의 보존과 복원에 치중하면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일방적인 희생과 소외를 강요하고 있음.
- 이에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역사와 문화보존은 물론이고, 해당 지역주민과의 공존·공생을 위한 미래지향적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의 한옥지원과 관련 조례의 제·개정을 위한 한옥 및 한옥밀집지역 지원을 위한 한옥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함.

3.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
-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 한옥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서울은 현대 지식·정보사회의 세계적인 중심인 동시에 600년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유구한 역사와 문화·전통이 살아 숨 쉬는 도시임.
- 이 중 서울의 가장 중심부인 도심부(4대문안 등) 주변은 한양도성과 근대건축물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재가 산재해 있고, 우리 고유의 주거형태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한옥밀집지역을 포함하고 있음.
- 최근 아파트 중심의 획일적 주거문화에 대한 반성과 함께 한옥과 한옥마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이 지역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서울시도 이미 한옥밀집지역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북촌과 경복궁 서측을 잇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는 등 해당 지역 보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세계문화유산 등재 계획도 갖고 있음.
- 하지만, 서울시의 한옥밀집지역 계획은 과거로의 복원과 보존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오랜 시간 자신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여러 불편을 참아오면서 한옥을 지켜온 상당수 해당지역 주민의 심정을 외면한 일방적인 계획에 불과해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
- 또한 한옥의 특성상 인구감소가 불가피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문제, 교육문제 등 한옥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마을공동체 전체가 무너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특별시의회는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한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역사의 보존과 현재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의 재산권과 주거권 등 삶의 질 향상을 함께 고민하는 미래지향적이고 주민친화적인 새로운 정책 대안 마련에 앞장서야 할 것임.
- 이에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옥 밀집지역 보존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점검과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한옥밀집지역주민의 재산권과 주거권, 교육환경 등 개선대책을 제시하고 관련 법령과 조례의 재.개정 사항 등을 추진함으로써 수도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는 동시에 미래 중심도시로서의 활력과 생동감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의회 한옥지원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결의함.

2014. 8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